
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

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(김기현·김태선·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 설치·운영, 박람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)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·수익할 수 있게 함(안 제19조).
-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고,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하며, 해당 지역에서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 등).

II. 검토의견

1.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연계 개정 감안 필요(안 제19조)

- 안 제19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는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.
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(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 국유재산특례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¹⁾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, 해당 별표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데, 현재(2025. 12. 18. 기준) 안 제19조제1항의 국유재산특례 신설과 관련된 “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”이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안 제19조제1항이 실효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별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나, 개정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. 다만, 안 제19조제1항의 효력을 위해 제정안의 시행 이후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별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1)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제4조(국유재산특례의 제한)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.
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.

2.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별표 개정 필요(안 제25조·제29조)

- 안 제25조는 울산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산림청장이 승인한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등 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·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, 안 제29조는 시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의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날부터 박람회 관련 설치·이용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25조의 조성사업구역에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·이용이 이루어 지므로 안 제29조의 박람회 관련시설 설치·이용지역은 조성사업구역과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·지구 등은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동법 제5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²⁾

이에 따라 「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」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별표에 ‘박람회장 조성

2)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역·지구등”이란 지역·지구·구역·권역·단지·도시·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·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(一團)의 토지(토지와 연결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 다. 이하 같다)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
제5조(지역·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) 지역·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(지역·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없다.

1. 별표에 규정된 지역·지구등
2.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·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·지구등
3.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,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·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·지구등

사업구역'을 추가한 바 있음.³⁾

-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조성사업구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과 그 성격이 같아 보이며 제29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, 국토교통부는 이 제정안 부칙을 통해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을 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므로, 제정안 부칙 제7조에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별표를 개정하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마련함.

<부칙 제7조에 대한 수정의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<신 설>	부 칙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「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」 제26조(조성사업구역의 지정)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·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(이하 “조성사업구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·고시한다.

제27조(행위 등의 제한)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·자갈·모래의 채취, 수산동식물의 포획·양식,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 <법률 제8901호, 2008. 3. 14.>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연번 214번의 다음에 215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5 | 「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」 제26조 |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

개 정 안		수 정 의 견	
		253 「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동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	조성사업구역

3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체계·자구를 검토한 결과, 인용 조문의 수정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병 섭)